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 중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업무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검토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검토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검토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검토 재개를 결정한 경우 검토 재개시까지의 기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 중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

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검토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검토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검토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검토 재개를 결정한 경우 검토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제3호에 따라 검토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검토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호 중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검토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검토 재개를 결정한 경우 검토 재개시까

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또는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검토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검토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로,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검토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검토 재개를 결정한 경우 검토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호 중 “**자의**”를 “**자 또는 그**”로, “**인정되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으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할 경우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중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의2, 제24조의2,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 또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 ----- ----- ----- -----,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3. ----- ----- ----- ----- ----- -----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신 설>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
 --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 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

제2조의2(업무단위 추가등록 검토 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검토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검토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기간
3.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

일임업 : 매년 4월 1일부터 다
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도입
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할 수 있다.

2. (생략)

② (생략)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17조의4
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
다. <단서 신설>

일임업 : 정관에서 정하는 기
간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 다만, 금융위원회가 제3호
에 따라 검토를 중단한 경우 소
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
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중단한 날부
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검토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1. 2. (생략)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 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여 검토를 중단한 -----
----- 기간
(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